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(허성무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8938 발의연월일: 2025. 3. 14.

발 의 자:허성무ㆍ이수진ㆍ김기표

김문수 · 최민희 · 문정복

윤준병 · 송재봉 · 전재수

한준호 · 이병진 의원
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오늘날 기후위기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중대한 현안이나 여전히 그 위험성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낮고, 정부 정책의 우선순위에서도 후순위로 밀리고 있는 실정임.

또한 기후위기로 인해 탄소중립 등 선진국에서 다양한 규제가 시행되고 있는 바 수출 의존도가 높은 대한민국 또한 규제에 대해 다양한 방안 및 정책을 마련하고 있으나 이를 주관하는 부처가 없이 여러 부처에 걸쳐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임. 이에 따라 소관 부처별 정책 간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며 기후위기 대응에 관한 전문적이고 상호보완적인 정책 시행이 어렵다는 의견이 있음.

이에 기후위기에 대비하는 주관 부처로서 기후에너지부를 중앙행정기관으로 신설함으로써, 기후 변화에 대한 선제적이고 효과적인 대응

과 에너지 개혁과제를 수행하고자 함(안 제26조제1항, 제38조제1항 및 제46조).

법률 제 호

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
정부조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6조제1항에 제2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20. 기후에너지부

제38조제1항 중 "에너지 · 지하자원에"를 "지하자원에"로 한다.

제4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6조(기후에너지부) 기후에너지부장관은 기후 변화 대응 및 에너지 에 관한 정책의 수립·운영 및 총괄·조정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조직신설에 따른 소관 사무 및 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) ① 이법 시행 당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·농림축산식품부장관·산업통상자원부장관·보건복지부장관·환경부장관·국토교통부장관·해양수산부장관 및 기상청장의 소관 사무 중 제46조의 개정규정에 규정된 사무는 기후에너지부장관이 승계한다.

② 이 법 시행 당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· 농림축산식품부 · 산업통

상자원부·보건복지부·환경부·국토교통부·해양수산부 및 기상청의 소속 공무원 중 제46조의 개정규정에 규정된 사무를 담당하던 공무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부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.

제3조(종전의 법률에 따른 고시·처분 및 계속 중인 행위 등에 관한 경과조치)이 법 시행 전에 기후에너지부장관이 승계하는 제46조의 개정규정에 규정된 사무와 관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·농림 축산식품부장관·산업통상자원부장관·보건복지부장관·환경부장관·국토교통부장관·해양수산부장관 및 기상청장이 행한 고시·행정 처분,그 밖의 행위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부장관·농림축산식품부 장관·산업통상자원부장관·보건복지부장관·환경부장관·국토교통부장관·해양수산부장관 및 기상청장에 대한 신청·신고,그 밖의행위는 기후에너지부장관의 행위 또는 기후에너지부장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.

제4조(다른 법령과의 관계)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(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령을 포함한다)에서 기후에너지부장관이 승계하는 제46조의 개정규정에 규정된 사무와 관련하여 "과학기술정보통신부"·"농림축산식품부"·"산업통상자원부"·"보건복지부"·"환경부"·"국토교통부"·"해양수산부" 및 "기상청"을 인용한 경우에는 "기후에너지부"를, "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"·"농림축산식품부장관"·"산업통상자원부장관"·"보건복지부장

관"·"환경부장관"·"국토교통부장관"·"해양수산부장관" 및 "기상 청장"을 인용한 경우에는 "기후에너지부장관"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제26조(행정각부) ① 대통령의 통	제26조(행정각부) ①		
할하에 다음의 행정각부를 둔			
다.			
1. ~ 19. (생 략)	1. ~ 19. (현행과 같음)		
<u><신 설></u>	<u>20. 기후에너지부</u>		
②・③ (생 략)	②·③ (현행과 같음)		
제38조(산업통상자원부) ① 산업	제38조(산업통상자원부) ①		
통상자원부장관은 상업・무역			
·공업·통상, 통상교섭 및 통			
상교섭에 관한 총괄·조정, 외			
국인 투자, 중견기업, 산업기술			
연구개발정책 및 <u>에너지·지하</u>	<u>지하자원에</u>		
<u>자원에</u>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.			
② ~ ⑤ (생 략)	② ~ ⑤ (현행과 같음)		
<u><신 설></u>	제46조(기후에너지부) 기후에너지		
	부장관은 기후 변화 대응 및		
	에너지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		
	운영 및 총괄·조정에 관한 사		
	무를 관장한다.		